

(비공식 번역본)

## 투자위원회 고시

### 제 6/2560 호

####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촉진 정책

태국이 종합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불기 2520 년(1977 년) 투자촉진법 제 16 조 두 번째 단락, 제 18 조, 제 31 조 및 제 35 조에 의거하여 투자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고시하는 바이다.

1. 불기 2557 년(2014 년) 12 월 3 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 2/2557 호에 첨부된 일반적인 투자촉진 활동 목록에 Section 7 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다. 활동, 조건 및 인센티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ection 7 서비스 및 공공 유틸리티

활동	조건	인센티브
7.28 의료 서비스		
7.28.1 태국 전통의료 공공서비스	1. 태국 전통 의학과 관련된 자격증 또는 전문 증서를 보유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2. 해당 시설은 태국의 전통의학 및 대체 의학국에서 승인한 품질 기준에 따라 지역 병원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에 통과해야 한다.	A3
7.28.2 전문의료센터	심장질병(관상동맥질환, 심장 수술 및 심부전), 암질환(항암화학요법 및 영상학과) 및 신장질환(투석 센터) 등과 같이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촉진을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적합한 인력고용 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2.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도구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 보건부의 전문 표준, 규정 또는 기타 관련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4. 센터로의 접근성과 서비스 분배를 고려해야만 한다.	A2

7.28.3 병원	<p>촉진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기 2557 년(2014 년) 12 월 3 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 2/2557 호에 따른 1 인당 소득이 낮은 20 개 지역</li> <li>2. 남부 국경지역 즉, 나라티왓, 빠따니, 알라, 싸툰 및 송클라 지역의 4 개의 암프* (암프 짜나, 암프 나타위, 암프 싸바여이 및 암프 테파) (참고: 암프는 우리나라 군(郡)과 유사한 행정 구역)</li> <li>3. 특별경제개발지역</li> </ol>	A2
7.28.4 의료이송서비스 (육,해,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기관의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환자용 이송 서비스와 관련된 표준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li> <li>2. 공공 보건부의 표준 또는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현대적 도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li> </ol>	A3

2. 투자촉진 카테고리 7.28.1 태국 전통의료 공공서비스 및 7.28.2 전문의료센터에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에 위치할 경우, 2017 년 3 월 16 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 4/2560 호 「동부경제회랑(EEC) 투자촉진방안」에 따라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 종료 후 5 년간 투자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법인 소득세율에서 50%를 감면한다.

본 고시는 2017 년 3 월 24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일 2017 년 3 월 3 일  
(General Prayut Chan-o-cha)

투자위원회 의장